

AIPPI • JAPAN



Office Address
AIPPI JAPAN
4F, Yusei Fukushi Kotohira Bldg.
14-1, Toranomom 1-chome,
Minato-ku Tokyo,
105-0001, Japan
Telephone : 81 3 3591-5301
Facsimile : 81 3 3591-1510
E-mail : japan@aippi.or.j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Japan

한국 특허청
디자인 심사정책과 귀하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8,000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의 일본 부회인 AIPPI • JAPAN 은 1100 명의 회원(개인회원 900 명, 단체회원 200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에는 변리사, 변호사, 기업, 학자가 포함됩니다.

AIPPI • JAPAN 에서 제시받은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15일
AIPPI • JAPAN
회장 가타야마 에이지(片山 英二)

「한국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견모집 원고)」에 대한 의견

AIPPI·JAPAN

1. 의견의 골자

- 95 조 1 항 4 호··해당 조문에 규정된 「인용」의 의의를 명확히 나타내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희망한다.
- 2 조 1 항 3 호··그래픽디자인의 보호에 관해 등록요건의 판단이 엄격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 의견 설명

■ [95 조 1 항 4 호]

법률안의 제 95 조 1 항은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뒤, 제 4 호에서 「교육, 인용(引用) 또는 시사보도를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다만, 디자인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통상적인 실시를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면 디자인권의 효력은 교육, 인용 또는 시사보도를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디자인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통상적인 실시를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법률안의 제 93 조에 의거하여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2 조 1 항 8 호에서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디자인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경우에는 종래의 해석을 답습할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이 서체에 관한 경우에는 법률안 제 95 조 2 항이 서체에 관한 디자인권의 효력에 관해 제한 규정이 되므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이 본 법률안에서 새롭게 대상이 된

그래픽디자인인 경우, 해당 등록디자인을 사용하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시가 인용 목적의 실시가 되는지 어떤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 즉 「인용」의 정의가 법률 상 명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있어 「인용」의 정의 명시 필요성

①기업에서는 사내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작성·공표행위, 사진촬영에 있어 그래픽디자인을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활발한 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래픽디자인이 등록그래픽디자인일 경우, 실시에 포함되어 버리는지, 또는 인용의 범위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그래픽디자인이라고 하는 종이나 화상이라는 간편한 매체에 표시되고 누구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각 없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선의의 침해자가 늘어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조 1 항 3 호]

법률안 제 2 조 1 항 3 호는 이번 개정에서 도입되는 그래픽디자인의 정의규정입니다. 개정에 따라 그래픽 심벌, 로고, 장식, 표면문양 등을 포함하는 그래픽디자인이 등록되게 됩니다. 제품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고 생각되어 온 이들 그래픽디자인이 올바르게 권리 행사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있습니다.